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4다200748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재판경과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4다20074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나64883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9. 7 선고 2021가단5083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1. 유한회사 A

2. 유한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경광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C

판결 선고 2024. 4. 16.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나6488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유한회사 A에 대하여는 12,210,2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원고 유한회사 B에 대하여는 30,525,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N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8. 7. 12. 피고와 태양광발전소 설치허가를 받아서 이를 건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대금: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589,600,000원, 원고 유한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 1,474,000,000원]을 체결하였는데, 관할관청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계약금, 중도금에서 이미 진행된 용역대금을 정산하여 공제한 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2018. 7. 19.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원고 A은 58,960,000원, 원고 B은 147,4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 후 무안군에서 2020. 6. 4. 위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함으로써 위 공사 진행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계약금(원고 A 58,960,000원, 원고 B 147,400,000원)에서 공제해야 할 이미 진행된 용역대금과 관련하여, ① 원고들 스스로 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원고 A의 경우 22,000,000원, 원고 B의 경우 44,000,000원과 위 용역수행과정에서 피고가 지출한 지반조사수수료 1,430,000원, 산림조사서 방재계획서 작성비용 4,000,000원, 산림조사서 및 방재계획서 재작성비용 600,000원을 공제하였고, ② 피고가 원심에서 추가 공제를 주장한 42,736,000원에 관하여 원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비용 42,736,000원 중 원고들의 계약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인 원고 A의 경우 12,210,285원 [= 42,736,000원 × 58,960,000원 / (58,960,000원 + 147,400,000원)], 원고 B의 경우 30,525,714원 [= 42,736,000원 × 147,400,000원 / (58,960,000원 + 147,4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이 추가로 공제를 인정한 42,736,000원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다투었다고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변론의 전체를 살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130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제1심에서부터 계약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이 원고 A의 경우 22,000,000원, 원고 B의 경우 44,000,000원 이외에는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피고는 위 금액이 아니라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가 불허된 2020. 6. 4.까지 실제 지출한 비용 106,53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② 제1심은 원고들이 위와 같이 자인하는 금액 이외에도 실제로 피고가 지출한 지반조사수수료 1,430,000원, 산림조사서 방재계획서 작성비용 4,000,000원, 산림조사서 및 방재계획서 재작성비용 6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계약금에서 공제한 사실, ③ 피고는 원심에 제출한 2023. 8. 25. 자 준비서면에서 위 지출 비용 106,530,000원 외에도 용역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 지출, 법인차량 운영비, 법인카드 사용액으로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인 42,736,000원을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④ 위 준비서면은 2023. 8. 28.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3. 8. 30. 원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 추가 정산할 금액이 42,736,000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 소송복대리인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원고들 소송복대리인이 원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추가 공제 주장을 한 42,736,000원에 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원고들은 제1심에서 공제를 자인한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까지 공제를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추가 공제 주장 사실을 다투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고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추가 비용 42,736,000원의 공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추가로 공제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백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하여는 12,210,2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원고 B에 대하여는 30,525,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노태악

대법관김선수

대법관오경미

주심대법관서경환